

4. 國民便益을 위한 制度改善 方案

建設部 1991. 7

1. 배 경

당부는 '91년중에 일선기관, 업무수행과정,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행정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의 현저성이 강한 중앙정부 차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위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며, 아울러 획기적인 대민행정쇄신을 위한 종합적인 민원업무처리 제도개선을 마련 '91. 5. 16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정부투자기관에 시달하여 대민봉사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바 있으며, 법령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92년 대민행정쇄신방안을 마련토록 하므로써 국민 편익 위주의 행정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91 제도개선 총괄

- 총 8개분야 27건(건축 12건, 국토이용 2건, 토지 3건, 중기 7건, 도로 1건, 도시 1건, 민원업무처리규정개선방안 1건)
- 개선실적 9건
- 개선계획 18건

'91 제도개선 사항

가. 추진중인 제도개선 사항

건축분야(8건)

① 소규모주택 신축의 신고제 전환

현행 건축법상 도시지역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일정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설계도서작성 비용절감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 * 일정규모: 18평 이하
- * '91 건축법시행령 개정

②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기준 조정

현행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기준은 인접대지로부터 띄는 거리가 1~2m로 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 조정하여 기존 주택가에 다세대주택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인접건물에의 사생활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 '91 건축법시행령 개정

③ 농어업용 축사, 창고건축의 규제완화

현행법상 시장, 군수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대하여 주택은 60㎡ 이하, 축사 및 창고는 100㎡까지 신고로 건축하던 것을, 주택은 100㎡, 축사 및 창고는 150㎡까지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허가취득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경감함.

- *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 읍·면지역중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

	현행	개선
주택	60㎡ 이하	100㎡ 이하
축사 및 창고	100㎡ 이하	150㎡ 이하

- * '91 건축법시행령 개정

④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의 범위축소

시장 또는 군수가 3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건축심의회의 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건축물의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승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조정함으로써 민간경제 자율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건축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코자 함.

* 사전승인 현황('79~'91. 6): 15건

* '91 건축법시행령 개정

⑤ 건축물 용도분류의 합리적 조정

현행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하는 형태별로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형태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기준의 적용을 고려하여 분류함으로써 축사를 부화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제실 등 새로운 용도를 신설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코자 함.

* 용도합병(예시) : 공연장과 집회장, 일반유흥음식점과 무도유흥음식점 위험물제조소와 위험물저장소, 폐차장과 자동차매매장

* 용도신설(예시) : 제실, 사당, 실내낚시터 등

* '91 건축법시행령 개정

⑥ 소규모 종교시설 용도변경 절차간소화

현행법상 종교시설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용도를 분류함으로써 소규모 종교시설이 인근상가 등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연면적 330㎡ 이하의 소규모 종교시설은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인근생활시설로 분류하여 허가없이 인근생활시설에 입주하도록 하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폭 6m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용도변경허가에 따른 경비와 시간의 낭비를 해소코자 함.

* '91 건축법시행령 개정

⑦ 농촌지역 자연녹지내 조경기준 폐지

현행법상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도시, 농촌 구분없이 대지면적의 40% 이상 조경하

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급도시를 제외한 읍·면의 자연녹지지역내에서는 조경의무를 폐지하여 조경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해소코자 함.

* '91 건축법시행령 개정

⑧ 건축현장조사 및 준공검사 대행 확대

현행 건축법상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에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미만 인근생활시설에 한하여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를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규모가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계속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어 건축사의 대행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건축허가관계업무처리의 신속을 꾀하고 건축행정체도의 발전을 도모함.

*

현행	개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미만 근린생활시설	기타 용도의 소규모건축물 추가 공장, 교회, 극장, 예식장 등

* '91 건축법시행령 개정

국토이용계획 분야(2건)

⑨ 용도지역내 공장, 건축물, 공작물의 용도변경 신고제도 폐지

국토이용계획법령상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시에는 당해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용도변경신고,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신고가 중복되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변경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 중복규제 대상 및 법령

대상	규제법령	비고
공장허가	국토이용관리법령, 건축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허가에관한법령	기념탑, 광고탑, 골프연습장내 철탑
일반건축물허가	국토이용관리법령, 건축법령	
공작물허가	국토이용관리법령, 건축법령	

* '9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⑩ 용도지구의 통합

국토이용관리법은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개발촉진지역은 다시 여러 지구로 세분되어 있어 이들 용도지구의 일부를 통합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편의와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10개)

보전용도지역: 경지, 산림보전, 자연환경보전, 수산자원보전, 유보지역

개발용도지역: 도시, 취락, 공업, 관광휴양, 개발촉진지역

*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지구(9개)

농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공업용지지구, 초지개발지구, 채광지구, 채석지구, 채토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 '91년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중기분야(6건)

⑪ 중기대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현행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허가업무를 '91 상반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으로 시, 도에 위임하고 '91 하반기 중기관리법 개정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

*	중 기	자 동 차
정 비 업	허가제→등록제로 개선	허가제
대 여 업	허가제→등록제로 개선	• 면허제: 14종 사업(렌트카) • 등록제: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자동차운수사업(장의차)

* '9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

* '91 중기관리법 개정

⑫ 중기의 경미한 형식변경은 신고제로 전환

현행 경미한 형식변경사항도 형식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간단한 차체형상 변경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형식변경사항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중 기	자 동 차
경미한 형식변경 신고기관 경미한 사항 내용	승인제→신고제로 전환 건설부장관 • 조종실 캡의 변경 • 승강구위치 및 규격변경 • 전조등, 작업등 위치 및 규격 변경 • 최대적재량 감소 • 기타 부수장치의 변경 등	신고제 교통부장관 • 승객의자위치 및 규격변경 • 간단한 차체형상 변경 • 타이어 규격변경 • 승차정원 및 적재량 감소 • 창유리위치 및 규격변경 등

* '91 중기관리법 개정

⑬ 중기에 대한 정기검사 불이행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현행 중기정기검사 불이행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중기소유자의 불만이 크기때문에 정기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불이행시의 처벌과 형평을 유지함.

- * 현행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검사받을 것을 재차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부과함.

* '91년중 중기관리법 개정

⑭ 중기에 의한 사고예방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의하여 과속, 과적으로 적발되어 통보된 중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기조종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퇴폐한 사고를 일으킨 중기사업자의 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중 기	자 동 차
• 과적, 과속중기에 대한 운행정지	신 설	없 음
• 운전원 안전교육	신 설	있 음
• 퇴폐한 교통사고 사업자 면허취소	신 설	있 음

* '91년중 중기관리법 개정

⑮ 중기조종사면허 취득절차 완화

조작이 간단하고 운전이 위험성이 적은 중기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일정교육 이수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중기중 소형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중 기	자 동 차
• 소형장비 운전면허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 대형장비 운전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대형면허

* '91년중 중기관리법 개정

⑯ 중기형식승인을 얻은 자의 확인검사기간 연장

현행 중기제작자는 중기형식승인을 받아 제작한 중기가 최초 확인검사를 받고 계속 제작한 때에는 매 6월마다 확인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확인검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중기제작자의 불편을 해소함.

	중 기	자 동 차
검 사 기 간	매 6월 → 2년으로 개선	최초 1대
검 사 기 관	국립건설시험소	교통안전진흥공단

* '91 중기관리법시행령 개정

도로분야(1건)

⑰ 접도구역내행위허가 사전승인제도 폐지

현행법상 군수가 접도구역(일반국도)내 건축물 등의 행위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

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토록 되어 있으나 국민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업무의 처리기간단축으로 국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 '91 접도구역관리지침 개정

도시분야(1건)

⑱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 개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적용하고 있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추상적 표현을 구체화하고 표현이 애매하여 해석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하여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행위허가기준

제 4 조(행위허가등)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지형조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5.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9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나. 기완료된 제도개선 사항

건축분야(4건)

① 건축신고면적의 확대

취락지역(대다수 농촌인구의 생활터전)안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선
취락지역중 시장, 군수가 지정한 지역내에서 60㎡ 이하의 주택만 신고로써 건축 가능	모든 취락지역내에서 100㎡ 이하의 주택은 신고로써 건축 가능
공업지역과 도시지역은 주택을 신축하는 모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현행과 같음
기타 지역은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주택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현행과 같음

② 건축허가시 허용오차 인정

현행 건축법상의 건축면적, 대지면적, 인접대지로부터의 띄는 거리 등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건축기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시에 발생하는 오차를 인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근거를 마련하였고 허용오차의 범위를 1~5% 내외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할 계획임.

③ 타법령상 인·허가 의제 확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의 종류를 종전의 6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함.

* 현행 6종 → 17종으로 확대

현행 일괄 처리사항(6종)	추가 일괄 처리사항(11종)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도로점용 허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허가

현행 일괄 처리사항(6종)	추가 일괄 처리사항(1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정화조 설치신고 -배수시설 설치신고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구내통신노선 설비준공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훼손 및 사도개설 허가 -농지전용 및 하천점용 허가 -접도구역안의 공작물설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변경 허가 -공작물 축조 허가 -상수도 공급시설 신청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

④ 건축허가 사전결정제의 활용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를 도입,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전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전결정을 받은 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하므로써 소요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기하도록 함.

* 건축법개정('91. 5. 31 공포)

토지분야(3건)

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강화

도시계획구역내의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는 660㎡를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되었던 것을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330㎡를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므로써 개발제한구역내의 투기억제와 호화별장을 억제토록 예방관리체계를 정립함.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대상: 현행 660㎡ 초과시 → 330㎡ 초과시로 강화

* '91. 6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⑥ 허가, 신고구역 지정권의 일부위임(개별 시·군·구 지역범위내에서 지정)

토지거래규제구역(허가구역 및 신고구역)의 지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하여 지가급등 및 투기발생에 신속하고 신속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91. 6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개정

⑦ 토지수용재결기간의 단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최회수를 종래의 연 7~8회에서 15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토지수용기간을 종래의 11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시켜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신속한 공공사업시행을 도모토록 하였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정 개정('91. 3)

중기분야(1건)

⑧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제도 개선

중기조종사(177,000명)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 출입은 읍, 면, 동장에게 신고하게 하므로써 신고대상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읍, 면,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 전, 출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일원화 하므로써 중기조정사의 불편을 해소함.

* '91. 5. 29 중기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대민행정분야(1건)

⑨ 대민업무처리 개선방안

㉞ 민원특별대책반 설치·운영

-구성

반장: 감사관

반원: 행정관리담당관, 법무담당관, 민원봉사실장,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4~5급 직원 약간명

-기능

-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수인의 합의도출이 요구되는 민원심의 민원에 대한 처리방향 제시
- 민원인에 대한 진술권부여 및 이해설득
- 현지출장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여부 심의

-심의를대상민원

- 고질적인 반복민원 및 다수인 민원
- 이해가 상충되는 민원
- 주요쟁점의 논란이 예상되는 법령질의
- 종전의 해석을 번복해야 하는 법령질의

㉞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으로 책임행정 구현

-현행 각과에서 소관 업무별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대하여 해당국장 책임하에 민원업무처리 책임자를 지정하므로써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공유체제 확립

-매주 국장(지방청 총괄과장) 책임하에 민원처리 상황점검을 의무화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기함

㉟ 민원서류의 부당한 이송지양

민원서류의 부당한 이송지양을 위한 민원서류 이송기준설정으로 반복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민원처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

〈이송기준〉

- 건축허가업무 등에 대한 질의와 같이 허가권자가 현지사실을 판단하여야 할 민원
- 도시계획입법권과 같이 시장, 군수 등 타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여야 할 민원
- 현실보상요구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의 평가 등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할 민원

㊱ 민원봉사실 강화 및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본부 및 지방청 민원봉사실 강화

- 현행 문서접수발송, 보안업무 및 민원업무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봉사실체제에서 민원업무만을 전담하는 민원봉사체제로 강화
- 민원봉사실에 민원전담 요원배치로 독자성 민원상담 및 민원안내 등 전담체제 구축
- 각과별로 배치, 활용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기준, 업무흐름도, 업무편람 등을 민원봉사실에 일괄 설치하여 민원안내서로 활용

-산하단체에 민원상담실 설치·운영

- 민원의 빈도가 높은 건축법제 및 행정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건축사협회와 시·도지부에 민원상담실을 설치·운영

- 상담대상

 - 단순한 건축법령 문의

 - 건축허가와 관련된 분쟁

 - 건축허가절차

 - 기타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의사항

㉞ 업무편람 등의 제작·배포로 민원의 사전예방

- 주택, 토지, 도시 등 각 분야별로 업무편람을 발간, 시·도에 배포함으로써 일선 대민행정공무원들이 인·허가 업무기준, 절차, 질의조복, 판례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내실있는 대민 봉사행정 자세를 확립

3. '92 대민행정 쇄신방안 마련

법령개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대민업무와 관련된 일선기관, 업무수행과정, 언론보도, 민원사항 등에서 제기된 문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쇄신 차원에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① 법령개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기획관리실장

- 위 원: 법조계, 연구기관, 민간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

② 법령개정위원회의 기능

-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성없는 제도, 법령의 발굴 및 개선방향 설정

- 법령의 운영, 해석 등에 대한 자문

③ 쇄신대상

-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합리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 규제대상이 확대 또는 축소되어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제도

- 해석에 대한 분쟁이 퇴폐하여 공공기관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의 재량권 일탈의 소지가 많은 제도
-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시·도에 권한의 위임이 필요한 제도
- 기타 현실과 괴리된 각종 제도

4. 행정권한의 위임

당부는 '91년중 5개분야 총 28건(도시 8건, 토지 2건, 건설업 1건, 건축 8건, 중기분야 4건, 물관련 5건)을 시·도에 위임할 계획으로, 이중 16건(도시 5건, 토지 2건, 건설업 1건, 건축 8건)은 이미 시·도에 위임하였으며 12건은 추진중에 있음.

분 야 별	계	위 임 완 료	추 진 중
계	28	16	12
○ 도시분야	8	5	3
○ 토지분야	2	2	
○ 건설업분야	1		1
○ 건축분야	8	8	
○ 중기분야	4	1	3
○ 물분야	5		5

첨 부 권한위임 내용 1부

가. 기위임된 사무

분야별	위임대상 사무명	관련 법령	위임 내용	비 고
도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 및 변경(서울시 및 직할시의 공업, 상업, 지역 제외)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결정(국가계획 및 2개 이상 도시계획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제외)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 •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제외) 결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30만㎡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부장관) - 실시계획인가(시·도지사)에 기위임) 	<p>도시계획법 제12조</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도시재개발법 제5조</p> <p>택지개발촉진법 제8조</p>	<p>시·도 위임</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91. 4. 18)</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토지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 미만인 국토이용계획의 결정·변경(수도권정비지역 제외) 	<p>국토이용관리법 제8조</p>	<p>위임범위 확대 (10만㎡ → 15만㎡)</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91. 4. 18)</p>

분야별	위임대상 사무명	관련 법령	위임 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소유실태신고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시·도 위임	"
중기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대여업자의 신상 변동신고의 수리 	중기관리법 제17조	시·도 위임	
건축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건축법 제44조	"	건축법개정 ('91. 5. 31) 공포일로부터 1년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 지정 (현행 시·도지사 승인) 	건축법 제30조, 제45조	시·군·구 이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축법 제45조, 제45조의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조례 승인 	건축법 제33조	시·도 이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위험구역내 건축금지에 관한 조례 승인 	건축법 제46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율에 관한 조례 승인 	건축법 제40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승인 (현행 31층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법 제5조	위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제한에 관한 조례 승인 	건축법 제39조	시·도 이양	"

나. 추진중인 위임대상 사무

분야별	위임대상 사무명	관련 법령	위임 내용	비 고
도시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기간 연장승인 • 주거환경개선시행자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 지정 •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택입주자격 판정기준일 승인 	<p>주거환경개선입시조치법 제6조 제6항</p> <p>“</p> <p>제7조제2항</p> <p>“</p> <p>제9조제1항</p>	<p>시·도 위임</p> <p>“</p> <p>“</p> <p>“</p>	<p>'91 하반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위임할 계획임</p> <p>“</p> <p>“</p>
건설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건설업법 제65조, 66조	“	“
중기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대여업의 허가 및 고시 • 중기대여업의 변경허가 및 고시 • 중기대여업의 취소·정지 	<p>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p> <p>“</p> <p>제14조2항</p> <p>“</p> <p>제16조</p>	<p>“</p> <p>“</p> <p>“</p>	<p>“</p> <p>“</p> <p>“</p>
물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할하천에 연결되지 않는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결정 인가 	하천법 제73조	시·도 위임	'91 하반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임할 계획임.

분야별	위임대상 사무명	관련 법령	위임 내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에 대한 인가 (현행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 	하천법 제73조	시·도 위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신설·개축에 관한 공사시행 인가 	" 제73조의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수도 설치 준공 검사 (현행 5,000㎡/일 미만 위임) 	수도법 제27조 령 제9조1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수도시설의 개량명령 등 (현행 10만㎡ 미만 위임) 	수도법 제29조	"	"